

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년 11월 30일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11월 15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11월 15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
제4차 복지건설위원회(2023년 11월 30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명절 귀성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 정착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명절 귀성차량 대상 무료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 주관 단체 지원(안 제15조의2 신설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2조, 제3조제1항, 제7조제2항제4호, 제9조)
-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촉 위원의 성별균형 고려(안 제8조제3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개정 이유

- 국민의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해 귀성차량 대상으로 무상 점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.

2) 주요 내용

- 명절 귀성차량 대상 무료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 주관 단체 지원 (안 제15조의2 신설)
 - 국민의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해 무료 점검 및 주관 단체 지원의 근거를 규정함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2조, 제3조제1항, 제7조제2항제4호, 제9조)
-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촉 위원 의 성별균형 고려(안 제8조제3항)
 -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에 따라 위촉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함.

다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명절 귀성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무상 점검의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그밖에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